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윤리정책과 및 공공혁신기획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, 공공윤리정책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6명(4급 1명, 5급 2명, 6급 2명, 7급 1명) 및 공공혁신기획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4명(4급 1명, 4·5급 1명, 5급 1명, 6급 1명)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으로 「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4. 9. 26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항 중 “인재경영과 및 경영관리과”를 “인재경영과·공공윤리정책과·공공혁신기획과 및 경영관리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공공기관 윤리 경영 제고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
2.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총괄
3.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
4. 공기업·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소관 공공기관 인사감사 지원 및 협의
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제4항에 따라 조세포탈, 회계부정, 불공정거래행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위법사유에 대한 평가 지원
6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3 제2항에 따라 금품비위, 성범죄,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
7.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·경제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점검 및 대

응

8.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 정비 점검
 9. 공공기관 직원의 공정한 채용 및 관련 제도 정착에 관한 사항
 10. 윤리경영 · 공정채용을 위한 임직원 교육 · 컨설팅 활동 등에 관한 사항
 11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 · 고등학교 졸업 출신자 · 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 채용 제도 관리 및 지원
 12. 여성 · 장애인 관리자 확대 등 직장 내 사회적 형평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
 13. 「자격기본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채용 및 정보 가림 채용 지침에 따른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
 14. 탄력근무제 ·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관리 및 지원
 15. 그 밖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지원
- ⑪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. 공공기관의 혁신지침 수립 · 이행점검 및 지원
 2. 공공기관의 협업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추진
 3.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준 · 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 · 지원
 4. 공공기관 고객현장 및 고객만족도 조사 제도 운영
 5.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 불만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

6.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수립
 7. 공공기관 혁신수준의 진단·평가 및 후속조치
 8.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·선정·이행점검 및 혁신 성공모델의 개발·보급
 9.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현황 분석 및 경영 자문
 10. 공공기관의 투명·윤리 및 고객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
 11.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원
 12.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합리화 및 방만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
 13.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
 14. 공공기관 혁신조달 지원확대 및 정착을 위한 지원
 15.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관리 및 지원
-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1,082”를 “1,09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072”를 “1,082”로 하며, 서기관 “69”를 “71”로 하고,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“92”를 “93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 “398”을 “401”로 하고, 행정주사 “126”을 “129”로 하며, 행정주사보 “38”을 “39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총계 “1,082”를 “1,09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072”를 “1,082”로 하며, 서기관 “69”를 “71”로 하고,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“97”을 “98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 “412”를 “415”로 하고, 행정주사 “106”을 “109”로 하며, 행정주사보 “38”을 “39”로 한다.

별표 4의2의 제목 중 “제27조제2항,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”을 “제27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공공정책국) ① ~ ③ (생략)	제16조(공공정책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공공정책국에 공공정책총괄과 · 공공제도기획과 · 재무경영과 · 평가분석과 · <u>인재경영과</u> 및 <u>경영관리과</u> 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<u>인재경영과 · 공공윤리정책과 · 공공혁신기획과 및 경영관리과</u> ----- ----- -----.
⑤ ~ ⑨ (생략)	⑤ ~ ⑨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
	<u>1. 공공기관 윤리 경영 제고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</u>
	<u>2.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총괄</u>
	<u>3.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</u>
	<u>4. 공기업 · 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소관 공공기관</u>

인사감사 지원 및 협의

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4항에 따라 조세포탈, 회계부정, 불공정거래 행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위법사유에 대한 평가 지원
6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금품비위, 성범죄,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
7.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·경제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점검 및 대응
8.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 정비 점검
9. 공공기관 직원의 공정한 채용 및 관련 제도 정착에 관한 사항
10. 윤리경영·공정채용을 위한

<신 설>

임직원 교육·컨설팅 활동 등
에 관한 사항

11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
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·고등
학교 졸업 출신자·지역인재
등 사회적 형평 채용 제도 관리
및 지원

12. 여성·장애인 관리자 확대
등 직장 내 사회적 형평 인사
제도 관리 및 지원

13. 「자격기본법」 제2조제2호
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(NC
S) 채용 및 정보 가림 채용 지
침에 따른 인사 제도 관리 및
지원

14. 탄력근무제·원격근무제 등
유연근무제 관리 및 지원

15. 그 밖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
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지원

⑪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
항을 분장한다.

1. 공공기관의 혁신지침 수립 ·
이행점검 및 지원
2. 공공기관의 협업 활성화 전
략 수립 및 추진
3.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
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준 ·
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 · 지원
4. 공공기관 고객현장 및 고객
만족도 조사 제도 운영
5.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 불만
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
6.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
의 수립
7. 공공기관 혁신수준의 진단 ·
평가 및 후속조치
8.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
발굴 · 선정 · 이행점검 및 혁신
성공모델의 개발 · 보급
9.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현황
분석 및 경영 자문
10. 공공기관의 투명 · 윤리 및

⑩ (생 략)
제28조(공공윤리정책과) ① 공공
윤리정책과장은 서기관으로 보
한다.
② 공공윤리정책과에 두는 공무
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
와 같다.
제29조(공공혁신기획과) ① 공공
혁신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보

고객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
제도개선

11.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
강화를 위한 지원

12.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
합리화 및 방만경영 개선에 관
한 사항

13.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
에 관한 사항

14. 공공기관 혁신조달 지원확
대 및 정착을 위한 지원

15.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강화
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관리
및 지원

⑫ (현행 제10항과 같음)
<삭 제>

<삭 제>

한다.

② 공공혁신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	계	·	·	·	·	·	·
			<u>1,082</u>		<u>1,092</u>	+10	
일	반	직	·	·	·	·	·
계		·	·	·	·	·	·
			<u>1,072</u>		<u>1,082</u>	+10	
서	기	관	·	·	·	·	·
		·	·	·	·	·	·
			<u>69</u>		<u>71</u>	+2	
서	기	관	·	·	·	·	·
또	는	·	·	·	·	·	·
행	정	사	·	·	·	·	·
무	관		<u>92</u>		<u>93</u>	+1	
·			·	·	·	·	·
·			·	·	·	·	·
·			<u>398</u>		<u>401</u>	+3	
·			·	·	·	·	·
·			·	·	·	·	·
·			<u>126</u>		<u>129</u>	+3	
·			·	·	·	·	·
·			·	·	·	·	·
·			<u>38</u>		<u>39</u>	+1	
·			·	·	·	·	·



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의2]

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• <u>1,082</u>	• <u>1,092</u>	+10
일반직 계	• • <u>1,072</u>	• • <u>1,082</u>	+10
서기관	• • <u>69</u>	• • <u>71</u>	+2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• <u>97</u>	• <u>98</u>	+1
행정사무관	• <u>412</u>	• <u>415</u>	+3
행정주사	• <u>106</u>	• <u>109</u>	+3
행정주사보	• <u>38</u>	• <u>39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